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6
----------	------

발의년월일 : 2017년 2월 10일

발 의 자 : 이윤희, 박운기, 서윤기
유동균, 최관술, 오경환
강성언, 김영한, 김광수(노원)
김혜련, 이병해, 이정훈
우미경, 김제리, 남재경
조상호, 김창수, 김정태 의원
(18명)

1. 제안이유

- 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사업의 활성화와 공익성 강화를 위해 영업장소 지정 범위와 영업허가과정에서 우대조치 대상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음식판매자동차 사업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전통시장과 상권활성화 구역, 공영주차장 및 일반광장 등으로 확대함(안 제2조 제1항)
- 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할 때 우선할 수 있는 대상을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자립지원기관 등으로 확대함(안 제5조 제1항)
- 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위생관리 표준메뉴얼 보급을 추가하고 국가, 자치구,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부터 제6호를 제8호부터 제9호로 하고 제4호부터 제7호를 아래와 같이 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7.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제3조 제6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의 지역: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5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호의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제10조 제1항 “교육”을 “교육, 위생관리에 관한 표준 매뉴얼 보급”으로 하고 제4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자치구,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p> <p>1. ~ 3. (생략)</p> <p>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u>공공기관</u>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2조(영업장소) ①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u>공공기관</u>,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등 -----.</p> <p>5. 「<u>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u>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u></p> <p>6.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u>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u></p> <p>7. 「<u>주차장법</u>」 제2조에 따른 <u>노외주차장</u>으로서 시장이 설치한 <u>공영주차장</u></p>

5. 6. (생략)

② (생략)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신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호의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0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자금 융자, 창업·운영 교육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신설>

<신설>

8.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첨부서류) -----

-----.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의 지역: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

다음 각 호의 대상을-----
-----.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호의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① -----
----- 교육, 위생관리에 관한 표준 매뉴얼 보급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자치구,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